

공고

●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4-44호

과태료 납입고지서(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) 공시송달

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대상자에게 관할 지방검찰청의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**반송되어**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**공시송달**합니다.

2024년 8월 1일
서울전파관리소장

- 제목 : 과태료 납입고지서(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건) 공시송달
- 근거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04조(과태료)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42조(과태료 재판의 집행) 및 제43조(과태료 재판 집행을 위탁)
- 공시송달 대상

연번	고지번호	대상자명	실명번호	부과일	과태료 금액	고지주소
1	0162240191980000742	대한민족 홀딩스 주식회사	110111-7***** (696-87-0***)	2024-7-17	1,000,000	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, 신도림 테크노마트 6층 2**호(구로동)

4. 공시송달 내용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에 따른 체납자의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(공시)송달하였고,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 제24조에 의거 과태료에 3%의 가산금과,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(최대 75%)하며,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공고기간 : 2024. 8. 1. ~ 2024. 8. 14.(공고 게시일로부터 2주간)

※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(☎02-2680-170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